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년 8월 19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2011년 8월 22일

# 4.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및 제75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 6. 27(대통령령 22982호)로 개정되어 2011. 6. 30자로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재난발생시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된 주요내용>

- (1) 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당초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 예금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으나 “100분의 15” 이상금액으로 비율을 하향 조정
- (2) 안 제6조(기금의 용도)에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에서 규정한 사항을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기금의 제한적 사용규정에서 추가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법적인 근거조항을 명시
- (3) 안 제6조(기금의 용도)에서 각 호의 4개 항목의 용도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5호에서 10호까지를 신설하여 6개 항목이 추가됨으로서 사용용도에 대해 10개의 항목으로 확대

(4) 안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2010년 10월에 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인 기금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치수방재과” 에서 “생활안전과” 로 변경

(5) 국어기본법 과 한글맞춤법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적절한 용어로 정리

###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가 개정되고 2011년 7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재난관리기금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비율을 축소하여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는 반면에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등의 사용가능액을 증대시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나가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항목을 추가로 명시하여 현실적인 재난예방활동 및 재해복구사업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